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882호(號) 1933(昭和 8)년 4월 20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69호(號)

10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[朝鮮總督府鐵道], 사설철도[私設鐵道], 궤도[軌道] 및 항로[航路] 간[間]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3(昭和 8)년 5월 16일 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4월 20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5조(條) 중(中) 「철도(鐵道)·항로(航路)마다 그 단수(端數)를 1km(浬)로 절상(切上)하고」를 「철도(鐵道)·항로(航路)마다 그 단수(端數)를 1km(浬)로 절상(切上)하고, 승차권(乘車券)의 통용기간(通用期間) 계산(計算)의 경우 역시 동일(同一)하며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8조(條) 중(中)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- 4 인천(仁川)·강화(江華) 간(間)의 항로(航路)에 의(依)한 것에 있어서는 철도구간여객규칙(鐵道區間旅客規則) 제15조(條) 규정(規定)에 의(依)하여 산출(算出)한 일수(日數)에 항로편도(航路片道)당(當) 2일(日)을 추가(追加)함.

제13조(條) 중(中)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- 4 인천(仁川)·강화(江華) 간(間) 항로(航路) 2, 3등(等) 2할(割)

제14조(條) 중(中) 「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59조(條)부터 제62조(條)까지」를 「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59조(條)부터 제62조(條)까지, 제69조(條), 제71조(條) 및 제73조(條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15조(條) 중(中) 「여수(麗水)·시모노세키(下關) 간(間)」을 「여수(麗水)·시모노세키(下關) 간(間), 인천(仁川)·강화(江華) 간(間)」으로 개정(改正)함.